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00
------	------

제출일자 : 2025. 0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리더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비(안 제1조)

나. 건강리더 정의(안 제2조제5호)

다. 건강증진센터 정의 및 설치 등(안 제2조제6호 신설, 안 제15조 및 제16조)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

바. 건강증진센터 보조 및 지원(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신설)

사. 건강리더의 양성(안 제1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0조

2)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5. 4. 30. ~ 2025. 5.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0조”로, “구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을 “주민의 건강생활과 건강증진”으로, “구민의 체력수준”을 “주민의 체력수준”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리더”란 보건소가 실시하는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지역주민으로서, 보건행사 지원 및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건강증진센터”란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영양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중 “체력증진 실행계획을 매년”을 “실행계획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 의”를 “주민의”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구민”을 각각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민 체력증진”을 “주민 체력 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구

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 생활체육업무담당국장”을 “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민·단체”를 “주민·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체육관련”을 “생활체육 관련”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체력인증센터”를 “건강증진센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 등)”을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력증진”을 “영양관리 등 건강증진”으로, “체력인증센터”를 “건강증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력인증센터”를 “건강증진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체력인증”을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력 측정”을 “체력측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체력증진”을 각각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체력인증센터”를 “건강증진센터”로 한다.

-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경비보조 및 지원)”을 “(보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력인증센터의 설치·운영”을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으로,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주민들의 과학

적 체력관리, 맞춤형 운동처방”을 “체육지도자 및 영양사 등 인력 배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주민들의 체력 및 영양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처방”으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을 “비용을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체력증진 활동 및 체육지도자의 능력”을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역량”으로, “체력인증센터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을 “건강증진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필요한 경비보조 및”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물품 등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 강사비, 교구 및 재료비
 2.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쿠폰, 물품
 3. 신체활동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 선정 등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건강리더 양성) ① 구청장은 체력 증진 활성화 사업의 홍보 및 주민의 건강증진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건강증진법</u>」 제6조 및 「<u>국민체육진흥법</u>」 제16조의2에 따라 금천구 <u>구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으로써 <u>구민의 체력수준을 향상</u>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체력인증센터</u>”란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써 <u>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u></p> <p><신설></p> <p>제3조(실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p>	<p>제1조(목적) ----- 「<u>국민건강증진법</u>」 제6조, 제10조 ----- ----- ----- <u>주민의 건강생활과 건강증진</u>----- ----- <u>주민의 체력수준</u>----- ----- ----- -----.</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건강리더</u>”란 보건소가 실시하는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지역주민으로서, 보건행사 지원 및 지역사회 건강 지킴이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6. “<u>건강증진센터</u>”란 <u>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영양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장소</u>를 말한다.</p> <p>제3조(실행계획 수립) ----- -----</p>

한다) 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
병예방을 위한 체력증진 실행계
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운
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생략)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민
의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사
항
3. (생략)
4. 구민 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실행계획을 -----

-----.

제4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 ① -----
----- 주민의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

-----.

1. ----- 주민-----

2. ----- 주민-----

3. (현행과 같음)
4. 주민 체력 증진 -----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생략)

②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생활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구민·단체 중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체육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략)

④ (생략)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② (생략)

제3장 체력인증센터

제15조(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와 맞춤형 운동 처방 및

5. ----- 주민-----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건소장-----

--.

③ -----
-----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

---.

1. (현행과 같음)
2. 주민·단체 -----

--
3. 생활체육 관련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건강증진센터

제15조(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①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3. 체력증진 교실 운영
4.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주민들의 과학적 체력관리, 맞춤형 운동처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

영양관리 등 건강증진 -----
---- 건강증진센터-----
-----.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증진센터-----
-----.

1. 건강증진 -----
--
2. 체력측정 -----
3. 건강증진 -----
4. 건강증진 -----

5. 건강증진센터-----

제16조(보조 및 지원) ① -----
---- 건강증진센터의 운영---
----- 체육지도자 및 영양사 등 인력 배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주민들의 체력 및 영양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처방-----
----- 비용을

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체력증진 활동 및 체육지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 및 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할 -----.

② -----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과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역량 ----- 건강증진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물품 등의 -----.

1. 건강생활 실천 사업 운영 강사비, 교구 및 재료비
 2.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상품권, 쿠폰, 물품
 3. 신체활동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건강생활 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 선정 등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건강리더 양성) ① 구청장은 체력 증진 활성화 사업의 홍보 및 구민의 건강증진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리더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준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금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강유철
연 락 처	2627 - 2759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7호, 2023. 7.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금천구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 환경, 생활 양식을 말한다.
-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노동, 집안일, 출퇴근, 통학, 취미활동, 체력유지·향상을 위한 운동 등 신체적인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 “건강체력”이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밀접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을 말한다.
- “운동체력”이란 빠르고 폭발적인 동작, 복잡한 기술 동작 등 스포츠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체력을 말한다.
- “체력인증센터”란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실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체력증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4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

-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과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주민 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생활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구민·단체 중에서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활체육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단체 종사자 및 전문가
-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20.>
-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 ① 협의회의 회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체력인증센터

제15조(체력인증센터 설치·운영 등)

- ① 구청장은 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와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3. 체력증진 교실 운영
 4.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체육지도자 배치,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주민들의 과학적 체력관리, 맞춤형 운동처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구민체력증진 활동 및 체육지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 및 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